



입시공정관리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4
제정일자	2007.06.01
개정일자	2011.05.13
개정번호	Ver.1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학칙 제15조의 2에 의한 입시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구성과 임기)**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- ⑥ 위원회에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.

1. 대학 입시 공정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
2. 입학전형업무 시설의 관리 및 감독
3. 입학전형업무 주요과정 입회 및 감독
4.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
5. 입학전형 업무의 부정적 요인 개선
6. 기타 입시공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1/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감사팀 구성) ① 위원회의 임무 중 대학 입시 공정관리 및 자체감사 등을 위해 감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감사팀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, 부위원장이 당연직 팀장이 된다.
- ③ 감사팀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

제7조(보고 및 시행) ①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8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 ①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은 제4조 2항에 따른다.

부 칙

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**(경과조치)**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